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6 · 25 전 사 자 유 해 의 발 굴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권한의 위임)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유해 보호조치 요청’, ‘조사·발굴’, ‘전사자 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등 7개 호를 위임하고 있으나 이 중 ‘5년 단위 기본계획’은 사업에 대한 지침 성격의 문건으로 위임사항에서 삭제하고, ’21년 4월 13일 동법 개정을 통해 제10조의 2(유엔군유해의 발굴)이 신설됨에 따라 유엔군 유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전사자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전사자 유해의 보호조치 요청
3.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4.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의 확인
5.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6.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7.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유엔군 유해의 처리절차) 법 제10조2에 따른 유엔군 유해 발굴시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1.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발굴시부터 국군과 동일한 절차로 수습하여 보관한다.
2. 유해의 국적 및 신원확인을 위한 인류학 및 법의학적 감식과 유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다.
3. 유엔군 유해의 국적판정은 해당국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4. 국적이 확인된 유엔군 유해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병영정책과	
연 락 처	02-748-525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2. <u>삭제 <2015.7.13.></u>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발굴(조사·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 (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전사자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u>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2.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보호조치 요청 3.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4.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의 확인 5.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6.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7.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u><신 설></u>	<u>제15조 (유엔군 유해의 처리절차)</u> <u>법 제10조2에 의한 유엔군 유해 발굴 시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u>

	<u>1.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발굴시부터 국군과 동일한 절차로 수습하여 보관한다.</u> <u>2. 유해의 국적 및 신원확인을 위한 인류학 및 법의학적 감식과 유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다.</u> <u>3. 유엔군 유해의 국적 판정은 해당국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u> <u>4. 국적이 확인된 유엔군 유해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다.</u>
--	---